

정·점

‘이중국적’ 문제의 虛와 實

오 청 유
<고려대학교 대학원>

I. 서 론

지난 7월 6일 여·야는 해외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해외에서 활동중인 교포 과학기술자들의 국내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적법상 금지돼 있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이들 여·야 3黨의 정책위 의장들은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따라 해외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신의 유수한 과학기술자들이 국내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거주 우수교포인력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의 논의는 지난 95년에도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에 우리기업들에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하에서 통상산업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외무부, 법무부 등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결국 95년 12월 12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중국적 허용과 교민청 신설 계획을 배

지화하고, 교포사회의 법적·제도적 권리 신장 및 보호를 위해 현지교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민재단, 교포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외무부내 영사교민국을 확대개편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교포전담기구의 설치를 추진키로 하며,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교포의 경우 현재, 1~3년으로 돼있는 체류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 소유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 대선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포의 이중국적 허용과 교민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당선 후에도 “교포문제를 방치한 것은 정부와 교포 모두에게 손해였다.”고 언급할 정도로 교민에 대해 매우 진취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제 또다시, 과거(95년도)와 동일한 취지하에서 즉, 세계화, 국내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차원에서 해외교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贊反의 주

장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찬반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중국적 허용론이 제기되는 취지와 그 방안을 균원적으로 재비판하고, 바람직한 교포정책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찬반 논쟁

1. 반대의 논지

1) 병역기피 등 회피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반대론은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우려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즉,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토지소유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내국인의 자격으로, 남세나 병역의무등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중국적의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의무에 관한 의정서’(1930년)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가진 일방국가에 상주해 그 국가와 사실상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적 소속국은 그 사람에게 일체의 병역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韓美 이중국적자의 경우, 미국에 상주하고, 생활 본거지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곧, 이중국적이 현 상황에서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참정권/공무담임권의 문제

내국인과 외국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現行法체계상 해외에 생활근거를 두면서, 필요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과연 국가기밀을 포함한 중차대한 公務를 맡길 수 있겠는가 각종 선거법 적용에 있어 이중국적자를 국민으로 취급해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國際紛爭의 가능성

이중국적자가 제 3국에서 不當 또는 不法의 대우를 받았을 때, 어느나라가 그 사람을 自國人으로 인정하여 外交的 보호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두된다. 外交的 보호권의 행사는 자주 국제 분쟁을 야기하곤 했다. 일방 국적 소속국에서의 犯行後 타방 국적 소속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自國民不引導 원칙의 고수로 인한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도 가능한 한 이중국적을 줄여 이러한 국제 분쟁을 막자는 입장이다.

4) 國際法상의 國籍單一主義 原則

국제적으로 이중국적 허용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이스라엘등은 특수한 역사적 사정을 가진 나라에 불과하다.

5) 교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이중국적 허용은 자칫하면, 교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교포사회의 분열을 조

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의 美國교포들의 이중국적 요구가 美國내의 교포사회에 제 2의 조총련을 결성하려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중국적 허용의 범위를 일정 학력 이상의 전문가들로 한정하여 대거유입을 막겠다는 통산부 등의 복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동포사회의 이질감만을 조장할 뿐이다.

6) 출입국 관리상의 어려움

외국이름과 우리나라 이름으로 두 개의 旅券을 만들어 드나들게 되면, 출입국 관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犯罪조직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7) 타국 國籍法과의 관계

美國 이민, 국적法 제 349조는 '미국 시민권자가 自意로 타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타국에 충성을 서약하거나, 타국의 공직을 수락하거나 취임한 경우, 또 사전 허가없이 타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美國의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美國 시민권자인 해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美國 시민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찬성의 논지

이중국적 허용의 취지는 우수한 해외 교포들에게 본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언어장벽문제

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외로의 재산반출의 문제점도 逆移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중국적 허용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국적의 취득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 논거는 대부분 타당성을 상실한다.

III. 결론-이중국적 허용론에 대한 비판 및 해외 교포정책의 방향

1. 허용론에 대한 批判

1) 작금의 해외교포에 대한 선별적 이중국적 허용의 주장은 "세계화", "국내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규정은 다종 다양하나,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견해의 일단을 살펴본다면, 논자들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외국국적을 문제삼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정한 세계화'란 일부권리와 관련된 차별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내·외국인의 법적인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중국적의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적법이 아닌 여타의 사회/경제적 법률과 관련되는 것이다.

기업의 인력확보 차원에서 교포에 대한 선별적인 이중국적 허용의 논의가 전개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교포를 위한”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본국 이기주의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즉, 국내의 인력 수급정책이 주가 되고, 교포의 國籍法상의 지위는 이에 從屬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95년과 '98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대조적이고, IMF의 요구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추구되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판국에 구태여 이중국적을 부여하면서까지 교포인력을 국내 인력시장에 유인하여 경쟁을 격화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재외교포와 본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왜, 구태여 우수(?) 교포인가?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이중국적 허용의 논의는 특정자격을 가진 “우수한(?)”인력에게는 외국국적 위에 한국국적을 얹어주려 하면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동포들(특히, 중국/구 소련 거주 동포들)은 못 본체 하니, 이는 시민권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과학 기술인력을 교포에 한정시킬 이유는 없다. 진정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줄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교포 아닌 외국인도 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수한 기술인력의 국내 근무기피 요인이 과연 교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國籍法에 기인하는가? 외국인 대우가 고국으로의 귀환을 가로막는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기업내에서의 작업 환경, 기업 문화, 인간 관계등에서 느끼는 장벽과 고리가 이들의 歸巢本能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과학 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본국민의 교포에 대한 인식이 개별 기업단위에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변화해야 할 것이다. 훈 할머니의 태국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화, 국내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라는 취지와 선별적인 이중국적의 부여라는 방안은 상호 필연적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2. 해외 교포정책의 방향

해외 교포는 국력의 일부분일진데, 해외 동포들과 본국민이 상호 일체감을 형성하고, 각국의 해외 동포들을 통합하는 것은 국력증대에 긴요한 것이다. 해외 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의 원칙은 “한국인의 정신을 잃지 말되, 살고 있는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라” 는 것이다. “거주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 라는 말을 외무부의 당국자들은 즐겨한다. 따라서, 해외 동포정책의 한 측면은, 해외 동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국내활동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5백

50만 韓민족이 ‘제 2의 조국’에서 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모국 정부가 터를 닦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이다.

1) 국내에서의 각종 규제완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해외동포들이(非교포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토지 보유 제한 조치, 해외로의 재산반출 제한 조치, 국내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의 각종 규제를 보다 완화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교민청의 신설

교포사회는 세계화 시대에 빠진 자산이며, 두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

주국과 본국간 경제, 기술과 문화, 학술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교포사회를 하나의 올타리 속에 결집시켜 韩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신적 일체감을 제고하여 민족적 연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에 “재외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해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고도 해외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法제도를 설정하여 各國의 명문대학, 유력한 기관, 기업체에 우리동포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민청은 5백 50만 교민의 연대성을 확보하며, 본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해외동포 3자간의 대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본국 정부의 해외동포 지원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